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운영규정

2022. 10. 01. 최초제정	2025. 07. 01. 부분개정
2023. 01. 01. 부분개정	2025. 09. 01. 부분개정
2023. 02. 01. 부분개정	2025. 11. 01. 부분개정
2023. 04. 01. 부분개정	2025. 12. 15. 부분개정
2023. 09. 01. 부분개정	2026. 05. 01. 부분개정
2023. 10. 01. 부분개정	
2024. 04. 01. 부분개정	
2024. 09. 01. 부분개정	
2025. 04.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이념에 부합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4.01.>

제2장 운영조직

제2조(교원) ①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한 상담과 학위수여에 필수적인 졸업요건 등을 지도하는 교수를 지도교수라 한다.<개정 2025.04.01.>

②지도교수 1명은 학생 3명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다.

③학생은 1학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2조의2(대학원 운영) ①대학원 운영은 대학원장이 총괄하며,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석사학위센터를 둔다.

③보건전문기술대학원 석사학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4.01.]

제3조(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 ①석사학위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기술 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5.04.01., 2026.05.0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정별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체 인사의 구성을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4.01., 2025.04.01.>

③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개정 2025.04.01.>

④위원은 전임교원 및 관련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04.01., 2025.04.01.>

⑤운영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부서에 간사를 둘수 있다.<신설 2025.04.0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09.01>

②삭제<2025.04.01.>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25.04.01>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09.01>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24.09.01>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사학위과정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04.01.>
2. 삭제 <2024.09.01.>
3. 삭제<2025.04.01.>
4.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04.01.>
5. 삭제 <2023.04.01.>
6. 삭제<2025.04.01.>
7. 기타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04.01.>
8.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신설 2025.04.01.>
9.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04.01.>

제8조(석사학위과정 졸업인증심의위원회) ①석사 학위수여 요건 및 심사를 위해 각 학생별 석사학위과정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이하 “졸업인증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4.01.>

②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위원은 각 학생별 지도교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총장이 승인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09.01>

③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9.01>

1. 삭제<개정 2024.09.01>
2. 지도교수 1인
3. 지도교수 추천 학과교수 1인<신설 2024.09.01>
4. 산업체 경력 7년 이상으로 현재 재직 중인 자 2인

제9조(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기능)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

는 심사한다.<개정 2024.09.01>

1. 졸업계획서 승인 및 수정본(계획서) 재승인
2. 각 학생별 졸업인증심사(심사요지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3. 수료 후 졸업인증심사신청자에 대한 심사
4. 기타 졸업인증에 관한 사항

제3장 과정 및 정원

제10조(운영과정) 다음과 같이 본 대학교의 석사학위과정을 둔다.<개정 2023.02.01, 2024.09.01., 2025.04.01., 2025.09.01.>

구분	모집과정명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신기술진단검사(임상병리학)
	특수의료장비진단·치료향상(방사선학)
	디지털치위생관리(치위생학)
	스마트재활 헬스케어(물리치료학)
	디지털기반 치과보철(치기공학)

제11조(입학정원) 석사학위 각 과정의 입학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01.>

1. 신기술진단검사 : 5명
2. 특수의료장비진단·치료향상 : 5명
3. 디지털치위생관리 : 5명<신설 2024.09.01.>
4. 스마트재활 헬스케어 : 5명<신설 2025.09.01.>
5. 디지털기반 치과보철 : 5명<신설 2025.09.01.>

제12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석사과정은 학기제로 운영하며 수업연한은 4학기로 하고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04.01>

②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 42조의2에 따른다<신설 2025.11.01.>

제4장 입학

제13조(입학 및 전형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 선 이내로 하며 학생선발은 매학년도 또는 학기에 모집인원, 선발기준, 전형요소 등을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승인하여 실시한다.<개정 2025.04.01., 2026.05.01.>

제14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4.09.01., 2025.04.01.>

1.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과 관련한 분야의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재직경력의 인정범위, 기간, 절차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07.01., 2025.11.01.>
3. 모집과정별로 입학자격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기타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모집요강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09.01>

가.삭제 <개정 2024.09.01>

나.삭제 <개정 2024.09.01>

제15조(입학전형방법) 매 학년도 신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재입학) ①총장은 본 대학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재입학자는 재입학금과 함께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장 등록 · 휴학 · 복학 · 제적

제18조(등록 및 등록금) 본 과정의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졸업요건과 관련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금 이월 및 반환) 등록금의 이월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등 제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1조(휴학) ①학생은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휴학은 1년 단위로 시행한다.

③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군입대 및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에 의해서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2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6장 수업

제25조(수료 및 이수학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하고 학생은 기준에 따라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1.>

제26조(학기 당 이수학점) 학기 당 이수학점은 최소 3학점부터 최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구 지도를 위한 교과목은 졸업 이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09.01.>

제27조(선행학점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점을 인정하되,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24.09.01., 2025.04.01.>

1. 단기직무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학점인정위원회 및 석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학과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학과 학점인정위원회 및 석사학위과정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본교 전문학사과정 또는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이 전문기술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과목은 학부 졸업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후 ‘선행학점’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신설 2025.11.01.>

가.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것

- 1)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학과장이 인정한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2)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재학 중인 자(1학기 포함)로서 학과장이 인정한 학부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

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사전 승인

다. 이수한 과목의 성적이 B+(3.5) 이상일 것

라. 해당 교과목이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정규 교과목일 것

마. 학과 학점인정위원회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을 것<신설 2025.11.01.>, <개정 2026.05.01.>

제28조(이수학기)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수강 및 재수강) ①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면교과목과 원격교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②기 취득 교과목의 등급이 C⁺ 이하인 경우 재수강 할 수 있고 재수강하는 경우 최고 부여 등급은 A⁰ 이고, 기 취득 성적은 취소한다.

제30조(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교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학과 및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출결) 학생은 모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결의 판정은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과목 담당 교원이 하며 세부사항은 출결관리지침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32조(수업운영형태) 교과목의 특성에 맞춰 주간, 야간, 주말, 원격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의 운영형태는 해당 학기 시작 전 강의계획서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휴강 및 보강)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집중수업) ①휴일 등을 활용하여 여러 주치의 강의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집중수업’이라고 한다.

②각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집중수업을 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 미리 안내 및 공지하여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현장수업) 석사학위과정은 대학뿐만 아니라 산업체 현장에서도 수업할 수 있다. 다만,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 학생에게 미리 안내 및 공지하여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5.04.01.>

제7장 성적 및 평가

제36조(등급 및 평점) 평가에 따른 등급 및 평점은 학칙 제46조와 학칙시행세칙 제45조를 준용한다.

제37조(교원 자녀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①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의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 학과 학과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대학원장은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전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평가방법) 석사학위과정 각 교과목의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5.04.01.>

제8장 수료, 졸업 및 학위수여 기준

제39조(졸업계획서) ① 학생은 3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과정별 설치된 졸업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1>

② 졸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심의위원회에 졸업계획서 수정본을 재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졸업인증심의위원회는 졸업계획서가 재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정하여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1>

제40조(수료)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04.01>

1. 석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교과목 최소 평점평균 점수를 3.0 이상 취득한 자

제41조(졸업인증심사) ① 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4학기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졸업인증구분 선택에 따른 결과물과 심사신청서[별지 제5호, 제8호, 제11호, 제15호 서식]를 졸업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졸업인증과정을 주재하며, 의결권은 인증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 심사요지서[별지 제6호, 제9호, 제13호, 제16호 서식]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제10호, 제14호,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학기 중 졸업인증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5년 이내에 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24.04.01., 2024.09.01., 2025.04.01.>

1. 산업체수행결과보고서
2. 특허(재학 중 출원한 특허출원증 1건 이상)<개정 2026.05.01.>
3. 학위논문
4.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전국단위이상 학술발표에 한함)<개정 2024.09.01.>

② 삭제<2025.04.01.>

③ 제1항의 심사를 위해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심사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04.01., 2024.09.01., 2025.04.01.>

제42조(졸업사정)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를 학위수여 대상자로 확정한다.<개정 2024.09.01>

1. 제40조의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
2. 제41조의 졸업인증심의위원회 인증을 받은 자<개정 2024.09.01.>
3. 삭제 <개정 2023.01.01.>

제42조의2(조기졸업) ① 석사과정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졸업할 수 있다.<신설 2025.11.01.>, <개정 2026.05.01.>

1.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신설 2025.11.01.>
 2. 평균 평점 4.0 이상인 자<신설 2025.11.01.>
 3. 졸업논문 또는 졸업과제 및 졸업인증심사를 통과한 자<신설 2025.11.01.>
- ②조기졸업 신청은 석사과정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총장이 승인한다.<신설 2025.11.01.>, <개정 2025.12.01., 2026.05.01.>
- ③조기졸업과 관련된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은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운영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5.11.01.>

제9장 장학금 및 징계

제43조(장학금)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기간 동안 석사학위과정 장학금은 국고로 지원한다.<개정 2023.10.01. 2025.04.01.>

제44조(징계) ①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②학생의 징계조치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생 준칙에 따른다.

제10장 학위의 수여

제45조(학위수여 및 취소) ①제4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의 학위는 교무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개정 2024.09.01>

②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인증 심의 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장 자체평가

제46조(자체평가) ①석사학위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석사학위과정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3.04.01., 2025.04.01.>

②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내부위원 4인 내외 및 산업체 인사 50%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3.04.01.>

③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당연직 된다.<신설 2023.04.01.>

④석사학위과정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시행한다.

<신설 2023.04.01.><개정 2025.04.01>

1.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사항
2. 우수사항 및 개선안 도출에 대한 사항
3.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
4. 기타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3조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대학원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 제 42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대학원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산업체 수행결과보고서 심사요지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프로젝트 제목	한글				
	영문				
발표일	년 월 일				
심사요지	<i>※논문 지도교수님 심사요지를 받을 것. (최대한 상세히)</i>				
심사내용	심사항목			적합	부적합
	① 주제의 적합성(독창성)				
	② 논리의 일관성 및 논제의 명확성				
	③ 방법의 타당성				
	④ 내용의 종합적인 타당성				
	⑤ 체제의 종합적인 타당성				
<i>※부적합이 1건이라도 나올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적합, 부적합 O, X 로 표시</i>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위와 같이 산업체 수행결과보고서 심사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산업체 수행결과 심사결과보고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프로젝트 제목	한글			
	영문			
최종 심사 결과	구 분	심사결과 판정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심사 총평을 간단하게 기입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위와 같이 전문기술석사학위 산업체 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left: 200px;"> <div>심사 위원장 :</div> <div>(서명)</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left: 200px; margin-top: 10px;"> <div>심 사 위 원 :</div> <div>(서명)</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left: 200px; margin-top: 10px;"> <div>심 사 위 원 :</div> <div>(서명)</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left: 200px; margin-top: 10px;"> <div>심 사 위 원 :</div> <div>(서명)</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0px; margin-top: 20px;"> 첨부 1. 산업체 수행결과 심사 요지서 각1부. 2. 산업체 수행결과보고서 1부. 3. 표절검사 확인서 1부. </div>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특허 심사요지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특허내용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심사요지	<p>※논문 지도교수님 심사요지를 받을 것. (최대한 상세히)</p>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위와 같이 특허 심사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 위원장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특허 심사결과보고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특허내용	출원번호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최종 심사 결과	구 분	심사결과 판정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심사 총평을 간단하게 기입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p>위와 같이 전문기술석사 학위 특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심사 위원장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첨부 1. 특허 심사 요지서 각1부. 2. 특허 결과보고서 1부.</p> <p>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논문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

		심사 차수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논문제목	한글		
	영문		
논문발표일	년 월 일		
심사결과	심사결과	적합	부적합
※ O, X 로 표시			
수정필요 사항			
위와 같이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 위원장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심 사 위 원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논문 심사요지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논문제목	한글			
	영문			
논문발표일	년 월 일			
심사요지	*논문 지도교수님 심사요지를 받을 것. (최대한 상세히)			
심사내용	심사항목		적합	부적합
	① 예비심사 - 논문 주제의 적합성(독창성)			
	① 본 심사 - 예비심사 지적사항 수정의 충실성			
	②논리의 일관성 및 논제의 명확성			
	③연구방법의 타당성			
	④논문내용의 종합적인 타당성			
	⑤논문체제의 종합적인 타당성			
*부적합이 1건이라도 나올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적합, 부적합 O, X 로 표시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위와 같이 학위논문에 대한 심사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 사 위 원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논문제목	한글			
	영문			
최종 심사 결과	구 분	심사결과 판정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심사 총평을 간단하게 기입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p>위와 같이 전문기술석사 학위논문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심사 위원장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 style="text-align: 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첨부 1. 학위논문 예비 심사결과보고서(1,2차) 각1부. 2. 학위논문 심사 요지서(1,2차) 각1부. 3. 최종 논문 1부. 4. 표절검사 확인서 1부.</p> <p>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4.09.01.><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 심사요지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발표자료 제목	한글			
	영문			
발표일	년 월 일			
심사요지	※논문 지도교수님 심사요지를 받을 것. (최대한 상세히)			
심사내용	심사항목		적합	부적합
	① 주제의 적합성(독창성)			
	② 논리의 일관성 및 논제의 명확성			
	③ 방법의 타당성			
	④ 내용의 종합적인 타당성			
	⑤ 체제의 종합적인 타당성			
※부적합이 1건이라도 나올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함. ※적합, 부적합 O, X 로 표시				
적합여부	적합 :		부적합 :	
<p>위와 같이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에 대한 심사요지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심 사 위 원 : (서명)</p> <p>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p>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24.09.01.><개정 2025.04.01.>

전문기술석사학위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 심사결과보고서

학 과		과 정 명		
성 명		학 번		
입학연월	년 월	지도교수		
발표자료 제목	한글			
	영문			
최종 심사 결과	구 분	심사결과 판정		심사총평
	심사위원장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 심사 총평을 간단하게 기입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최종 판정	적합		부적합	
<p>위와 같이 전문기술석사학위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right;">심사 위원장 : (서명)</p> <p style="text-align: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 style="text-align: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 style="text-align:right;">심 사 위 원 : (서명)</p> <p>첨부 1.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 심사 요지서 각1부. 2. 산학공동학술발표자료 수행결과보고서 1부.</p> <p>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p>				